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나6874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나68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재가단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719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719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울

담당변호사 최철순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3. 8. 10.

판결선고 2023. 10.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719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중 ‘목조초즙 평가건본가’는 ‘목조초즙(현황 : 연와조와즙) 평가건본가’로 변경되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70.4㎡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 지상 목조초즙(현황 : 연와조와즙) 평가건본가1)를 철거하고, 위 L 부분 대지 2.7㎡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주진암, 판사 이정형, 판사 김연화

별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당초의 청구취지 중 ‘목조초즙 평가건본가’를 ‘목조초즙(현황 : 연와조와즙) 평가건본가’로 정정하였다